
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

- 영유아 ·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-

2026. 4. 22.

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I. 추진 배경	1
----------------	---

II. 추진 방향	4
-----------------	---

III. 추진 과제	5
------------------	---

1. 위기아동 조기발견 “우리를 찾아주세요”

2. 피해아동 보호·지원 “우리를 지켜주세요”

3. 학대 예방 및 가정회복 지원 “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”

4. 장애아동 학대 대응 “우리의 다양성을 알려주세요”

IV. 과제별 추진계획	12
--------------------	----

I. 추진 배경

◇ 추진 배경 및 필요성

- 영유아가 아동학대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검토
 - 최근 발생한 아동 사망사건의 경우 가정 내에서 보호자에 의해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
 - 아동학대는 주로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보호자가 그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피해아동 발견이 어려운 구조
 - 특히,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는 학대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거나 신고 후 피해아동을 보호·지원하는 데 한계 존재
 - 이에, 영유아의 특성과 최근 발생한 사건을 분석하여 위기아동의 조기 발견과 피해 회복을 강화할 필요
 - 영유아의 경우와 같이 의사표현·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 강화도 함께 추진

< 아동학대 주요 현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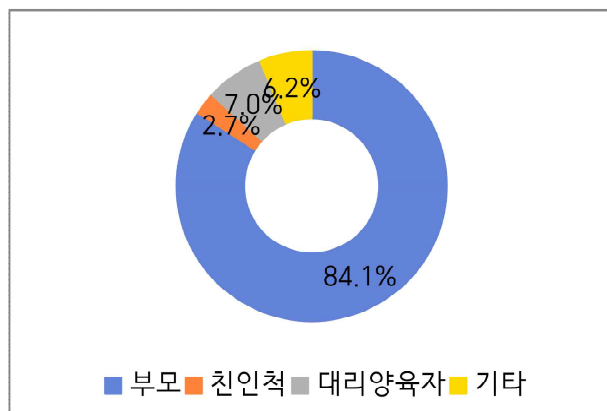
- ◆ 아동학대 신고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이며, 학대판단 건수는 감소

* 신고 ('20) 42,251건 → ('22) 46,103건 → ('24) 50,242건 / 학대판단: ('20) 30,905건 → ('22) 27,971건 → ('24) 24,492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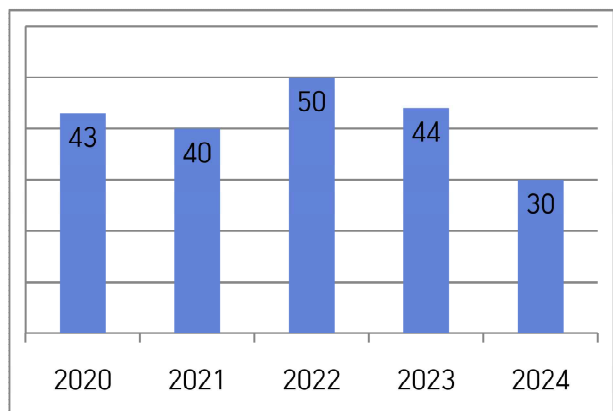
- ◆ 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최근 5년간 82~86%를 유지

- ◆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최근 5년간 매년 30~50명 발생

< 학대 행위자 유형('24년) >



<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 >



◇ 최근 아동 사망사건 분석

□ **(발견)** 피해아동이 영유아인 경우 아동의 사회적 활동이 적고 의사 표현·소통이 어려워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어려움

○ 2세 이하 아동의 아동학대 발견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, 심각한 학대 피해 발생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음

* 아동학대 발견율('24.) : (2세 이하 아동) 2.42%₀ < (전체 아동) 3.57%₀

** '22~'24년 아동학대 사망아동 중 2세 이하 아동 비중 **46.8%**

구분	2022년	2023년	2024년
아동학대 사망아동 수	50명	44명	30명
2세 이하 아동 수(비중)	28명(56%)	13명(30%)	17명(57%)

○ 한 사건의 경우 아동 사망 추정일 이후 아동 대면 점검, 위기 정보 반복 입수, 입학 연기 등 징후에도 아동 사망이 뒤늦게 확인

- 위기아동 발굴 체계, 아동 보육·교육 서비스 협력 체계 정비 필요

▶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올바른 양육 태도와 인식에 기반한 아동 학대 예방과 위기 징후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 구축이 중요

□ **(아동 보호)** 가정 내 사망 아동의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·양육, 사례관리 등 지원 필요

○ 특히, 자녀살해 후 자살(미수) 사건에서 생존아동, 동거 아동(피해 아동의 형제·자매 등)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 중요

▶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서 피해아동 외 가정 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(일시보호조치 등), 심리상담 등 지원

□ **(처벌)** 아동학대살해·치사 등 중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법다는 의견 제기

* 아동학대치사 등의 법정형 상향, 영아 대상 범죄의 가중처벌, 상습범에 대한 감형 제한,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(81,565명 참여, 법사위 회부)

○ 특히, 선행되는 아동학대범죄 행위가 없는 자녀 살해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살해죄 적용*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

*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기회(고의)에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살해가 이루어진 경우 적용

▶ 처벌 강화 필요성과 영향, 형벌 간의 비례원칙 등을 고려하여 현행 처벌 수준의 적절성 검토 필요

□ **(사건 분석)**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하나의 구조적 원인이 아닌 법령, 제도, 정책, 조직, 관행 등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가 많음

○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체계적 분석 체계의 미비로 종합적인 정책·제도 개선점 도출에 한계

▶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사건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국가 차원의 분석 체계 필요

*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 법률 시행 예정(26.8.4)

Ⅱ. 추진 방향

정책 목표

- ◆ 위기 영유아 조기 발견 및 보호자 인식 제고로 학대 예방
- ◆ 영유아·장애아동 등 취약 아동 특화 서비스 제공
- ◆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약 27.5% 감소
 - * 연간 피해아동 수 : '20~'24년 평균 약 41명 → '29년 30명

추진 과제

위기아동 조기발견

“우리를 찾아주세요”

- ▶ 위기 영유아 발굴체계 고도화
 - * 위기아동발굴시스템 고도화
- ▶ 의료·보육·교육 서비스 연계
 - *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, 영유아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연계
 - * 보육·교육기관 협력 강화

피해아동 보호·지원

“우리를 지켜주세요”

- ▶ 피해아동 회복지원 강화
 - * 학대피해아동쉼터,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 인프라 강화
- ▶ 법적·제도적 개선
 - *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
 - * 사망사건 분석체계 구축

학대 예방 및 가정 회복

“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”

- ▶ 학대 예방 및 권리 인식 증진
 - * 부모 교육 확대
 - * 예방적 지원 강화
- ▶ 피해아동 가족 보호·회복지원
 - * 집중 사례관리 확대
 - * 전문성 강화 등 사례관리 개선

장애아동 학대 대응

“우리의 다양성을 알아주세요”

- ▶ 장애아동의 다양성을 고려한 학대 대응
 - * 장애아동 특화 쉼터 운영
 - * 종사자 교육 강화
 - * 장애아동 학대 대응체계 강화

Ⅲ. 추진 과제

1 위기아동 조기발견 “우리를 찾아주세요”

◇ 위기 영유아 발굴 체계 고도화로 학대 예방 및 선제적 지원 추진

- **(위기아동 발굴 체계 내실화)** 예측모형(AI)을 활용해 위기의심아동을 발굴하고 양육 상황을 점검·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내실화 복지부·경찰청

< e아동행복지원사업 개요 >

- ◆ **(내용)** 분기별로 44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의심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, 읍면동 공무원이 아동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시 복지서비스 연계·학대신고 등 지원
 - (1~3분기) 분기별 약 3만 명, 모형·기획 발굴
 - (4분기) 약 1.5만 명,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
- ◆ **(주요 지표)** 의료 미이용, 아동학대 사례관리, 건강보험료 체납, 기초생활 수급 탈락, 가정폭력 정보 등
- ◆ **(현황)** 아동 약 72만 명의 가정방문, 약 10만 명에 서비스 연계, 751명 학대신고·수사의뢰('18~'25)

- **(영유아 집중점검) 의료 정보**(영유아건강검진 미수검, 의료기관 미진료, 예방접종 미접종)로 발굴된 6세 이하 아동 대상 집중 점검

- **(전수조사 실시)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**(약 5.8만 명) 전수조사 추진('26.5.~, 분기별 약 3만 명 조사), 경찰 협력 강화*로 실효성 제고

* 방문 거부 시 방문일자 지정 후 2회 방문, 재방문 시에도 가정방문 거부하는 경우 경찰 수사의뢰

- **(모형 개선) 3~6세 가정양육 아동의 의료정보를 절대 지표로 활용***하고 지표를 정기적으로 점검**해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발굴 모형 개선('27.~)

* (현행) 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만 의료정보 절대 지표로 활용

** 각 지표와 아동학대 등 위기 상황의 연관성(유효성)을 정기적으로 검증

- **(점검 내실화) 2세 이하 아동, 학대 이력이 있는 가정 점검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(전문인력) 동행**(‘26.5.~)

- 가정방문 점검 결과 보고 시 증빙 자료 첨부 의무화를 통해 대면 점검 의무 명확화('27.~)

< 6세 이하 의료미이용 아동 전수조사 기획(안) >

■ (개요) 의료미이용*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위기아동의 소재·안전 확인

*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, 의료기관 미진료, 정기예방접종 미접종

■ (대상)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아동 순으로 조사 진행

◆ (1차 조사^{5~7월}) 0~6세 의료기관 미진료 아동 및 0~3세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&정기예방접종 미접종 아동

* 0~2세 아동의 경우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동행

◆ (2차 조사^{7~9월}) 4~6세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&정기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및 1차 조사 이후 의료미이용 정보 신규 입수되는 아동

■ (규모) 약 5.8만 명 예상(정보 신규 입수 아동 수에 따라 변동 가능)

※ 6세 이하 의료미이용 아동 외 2회 이상 학대·신고 이력 가정 등 고위험군 대상 유관기관 합동점검(경찰·지자체·아동보호전문기관) 병행 추진(2·4분기 각 2천 명)

□ (위기정보 공유 확대) 지자체 내 사례관리·아동보호 부서* 간 공동 사례관리로 위기가구 내 취약아동 발견·관리 강화('27.~) 복지부

* 아동보호팀(아동학대전담공무원, 아동보호전담요원) - 드림스타트팀 - 희망복지팀 등 연계로 다양한 경로로 파악되는 위기정보 공유, 사각지대 방지

◇ 의료·보육·교육 서비스 연계를 통한 조기 발견 강화

□ (의료서비스 연계) 영유아 건강검진,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등 의료서비스를 활용한 아동의 건강·안전 점검 확대 복지부

○ (건강검진 개선) '영유아건강검진' 검사방법에 외상 등 이상 여부를 관찰해야 함을 명시하여 아동 건강·성장 상태 점검('27.~)

○ (가정방문 사업 확대) 전문인력이 2세 미만 영아 양육가정에 방문하여 건강관리·상담을 제공하는 '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' 단계적 확대('26.~)

*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·영아기 가정에 간호사·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태아·영아 건강·발달 점검, 부모교육 및 심리·정서상담 제공(보편적 서비스)

- **(보육·교육기관 협력 강화)** 아동 양육 상황 점검 관련 보육기관 협력 및 의무교육대상 아동 취학 관리 등 절차 강화^{교육부·행안부}
- **(어린이집 방치 의심 아동 점검)** 24시간 어린이집 장기 방치 아동 현황 점검 및 필요시 지자체 통보* 지침 개선('26.下)
 - * (원장) 아동을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(1개월)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경우 지자체에 통보 → (지자체) 아동의 계속 보육 또는 보호조치 필요성 등 판단
- **(보육·교육기관 결석 관리 강화)** 어린이집·유치원 무단결석 영유아 안전 확인 및 학대 예방·대응 요령 실행 기반 강화('26.5.~)
 - * 보육사업지침 내 무단결석 관리·대응 요령 포함, 어린이집 지도·점검 시 중점 점검사항에 해당 내용 명시, 아동학대 예방 가이드북(어린이집·유치원용) 준수 안내
- **(취학 정보 연계)** 취학아동명부, 입학연기대상자 명단 등 지자체가 보유한 취학 아동 정보를 교육청에 연계하는 시스템 개선('26.下)
 - * (현행) 읍·면·동의 취학 관련 정보를 교육당국에 공문으로 개별 송부 → (개선)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정보 공유 절차 간소화
- **(입학연기 절차 개선)** 보호자가 아동 입학연기 신청 시 아동을 동반 하도록 하여 취학대상 아동의 안전 확인 절차 강화('26.下)

2 **피해아동 보호·지원 “우리를 지켜주세요”**

◇ **피해아동 회복 지원 강화**

- **(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)** 공급부족 지역 및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('25. 155개소) 확대 운영('26.~)^{복지부}
- **(영유아 특화 쉼터 운영)** 영유아의 보호·치료·양육에 필요한 시설·인력을 갖춘 특화 학대피해아동쉼터 시·도별 1~2개소 지정 추진('27.~)

- **(일시보호조치* 개선)**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되는 가정의 아동, 학대 사망사건 생존 아동 등 보호를 위한 일시보호 요건 개선** 검토(‘26.~) ^{복지부}
 - * 1년 내 2회 이상 신고 및 재학대 우려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, 아동일시보호시설, 위탁가정 등에 일시적으로 보호
 - ** 반복성 판단 기준을 피해아동에서 가정으로 변경하는 등 「아동복지법」상 요건 개선 (현행) 동일 아동에 대한 2회 이상 신고 → (개선) 가정 내 아동 대상 신고 총합 2회 이상
- **(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원 강화)** 아동학대 조사·판단을 전담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적정인력 배치 및 근무 지원 강화 추진(‘26.下~) ^{복지부·행안부}
 - 전담공무원 인력 보강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추진(25. 현원 892명)
 - * 전담공무원 1인당 평균 담당 사례 건수는 51건, 지자체별 약 25~118건으로 편차 발생 (야간·주말 출동, 신변 위협 등 업무 난이도 고려 필요)
 - 학대 대응 업무 수행 경비 등 전담공무원 활동 지원 강화 검토
- **(의료지원 강화)** 인센티브 제공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신설 등으로 새싹지킴이병원(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) 운영 활성화 ^{복지부}
 - **(기관 확대)** 아동보호전문기관·학대피해아동쉼터 협력 의료기관을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지정하고 현판 수여 등 인센티브 강화(‘26.~)
 - **(역량 강화)** 광역 새싹지킴이병원 사업 전담 인력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대응 전문성 강화 교육 시행(‘26.~)

◇ 법적·제도적 개선을 통한 아동 권리 보호 강화

- **(법령 개정)** 아동학대살해·치사 등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* 강화, 자녀 살해를 아동학대(범죄)로 명시하는 방안** 등 검토(‘26.~) ^{법무부·복지부}
 - *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는 사형,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,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/ 형법상 살인의 죄는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 - ** (아동학대처벌법) ‘아동학대범죄’에 형법상 살인의 죄 포함 등 검토 (아동복지법) 아동학대의 정의에 자녀 살해(미수) 등 포함 검토
- 자녀 살해, 자녀살해 후 자살 미수 등도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을 적용하여 회복적 접근 강화

- **(사망사건 분석체계 구축)**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체계적·심층적 분석 체계를 구축하여 제도 개선점 도출 및 환류 추진^{복지부}
 - * 아동복지법 개정('26.2.3., 8.4. 시행)으로 관련 법적근거 마련 완료
 - ** **빅토리아 클림비 보고서(2003, 영국)** → 국가 아동정책 발표, 아동법 개정 및 아동보호서비스 전면개편 등 **아동보호체계의 대대적 개편 실시**
- **(기반 마련)** 특별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('26.8.)을 통한 심층분석 체계 구축
- **(특별위원회 운영)** 개정 법령 시행 후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 특별위원회 구성 및 사례 분석 추진('26.)
- **(아동사망검토제 도입)** 모든 아동사망 사례를 검토하여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 검토('26.~)
- **(소통 창구 확대)** 아동학대 예방·대응 관련 단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관심 지속 유도('26.~)^{복지부}
 - * 아동보호전문기관·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단체 등

3 학대 예방 및 가정회복 지원 “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”

◇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 인식 증진

- **(부모 교육 확대)** 아동 발달단계별 부모교육, 긍정양육*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활성화를 통해 아동 양육 역량 및 인식 강화('26.~)^{성평등부·복지부·교육부·행안부}
 - *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
- **(교육 홍보·안내 강화)** 아동 양육 관련 급여 수급자에 대한 교육 안내·제공 등 부모교육 과정 안내 강화
 - **(양육지원급여 연계)** 아동수당, 부모급여, 첫만남이용권* 신청 및 지급 결정 시 교육 콘텐츠 링크^{온라인}, QR코드·안내문^{오프라인} 등 제공('26.下)
 - *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생성·종료 시 발송되는 카드사 안내문자에 부모교육 안내 추가

- (양육 관련 기관 활용) 양육 커뮤니티·기관(산후조리원, 공동육아나눔터 등) 연계 및 찾아가는 부모교육 강화
- (정부24 활용) 정부24를 통해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부모 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종합하여 안내('26.下~)

- (교육 콘텐츠 강화) 교육 제공자* 간 콘텐츠 공유·협력, 맞춤형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교육 구성 내실화

* 가족센터^{오프라인}(생애주기별·가족유형별 부모 교육, 244개소), 육아종합지원센터^{오프라인·온라인}(영유아기 보호자 교육, 130개소), 아동권리보장원^{온라인}(긍정양육·아동학대예방교육) 등

- (예방적 지원 강화)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·가정 등에 대한 예방적 지원 강화('26.~)^{복지부}

- (시범사업 확대) 가정에 교육·상담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학대를 예방하는 '아동학대 예방·조기지원 시범사업' 실시('26. 600가정)

* 시범사업의 효과성 평가 및 본 사업화, 학대 예방을 위한 예방적 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

< '26년도 시범사업 주요내용 >

- ◆ (예방적 지원) 아동학대로 이어지기 전 예방적 지원으로 학대 예방
 - (대상) △학대 신고에 대하여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예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아동·가정, △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아동·가정
 - (지원 내용) △부모교육, 가족 유대 제고 등 가정회복프로그램(아동보호전문기관 등), △전문 양육코칭 지원(아동보호전문기관, 의료기관 등), △주기적 양육상황점검·지원(지자체)
- ◆ (긴급 지원) 아동학대 사례판단 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의료비, 돌봄비, 환경 개선, 필수 물품 등 긴급 지원(지자체 중심)

- (정신건강관리 연계) 정신건강복지센터 협력 강화를 통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자 및 가정 내 아동 보호·지원 강화

- 정신건강복지센터-지자체 간 상호 정보 공유 및 연계 확대 추진

◇ 피해아동 가족 보호 및 회복 지원

- **(집중 사례관리 확대)**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, 가족 휴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피해아동 가정의 회복 도모('26.~) ^{복지부}
- **(방문형 사업 확대)**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'방문 똑똑! 마음 똑똑!' 사업 확대 추진('26. 2,400가정)
* 사업 참여 가족의 1년 이내 재학대 발생 비율은 3.1%로 전체 8.7%의 36%에 불과('24.)
- **(휴식 프로그램 강화)** 템플스테이 등 휴식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가족 간 관계 개선 및 가족기능 회복 도모('26.下~, 조계종 협업)
- **(사례관리 강화)** 피해아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질 제고 및 연계 절차 개선 추진('26.~) ^{복지부}
- **(기관 지원 강화)**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('25. 102개소) 확대 운영, 슈퍼바이저 양성 및 장기근속 유도 위한 처우개선 추진
- **(절차 개선)** 실효성 있는 초기 개입을 위하여 사전통지, 의견청취 등 지자체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연계 절차 개선 검토

4 장애아동 학대 대응 “우리의 다양성을 알아주세요”

◇ 장애아동의 다양성을 고려한 학대 예방·대응

< '24년 학대피해 장애아동 주요 현황 >

- ◆ 학대의심사례 1,479건 중 아동학대 사례는 700건(부모에 의한 학대 73%)이며 그 중 발달장애아동 학대 사례는 608건(지적 장애 450건, 자폐성장애 158건)으로 전체의 86.9%에 달함
- ◆ 전년도 피해아동 중 1년 이내 재학대를 받은 아동 비율은 10.8%로 전체 8.7% 대비 높음

- **(장애아동 특화 쉼터 운영)** 장애아동의 보호·치료·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특화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 추진('26.~) ^{복지부}

- **(종사자 교육 강화)** 아동학대 대응 종사자 대상 장애 이해 교육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행('26.~) **복지부**
 - * 장애인개발원 등 교육콘텐츠 상호 공유 및 교육 시스템 탑재, 필수 교육과정에 반영
- 아동복지 서비스 종사자 대상 발달장애 방과 후 활동 서비스, 긴급돌봄 등 서비스 안내 강화
- **(대응체계 강화)**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-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상호 이해 및 협력 강화 추진('26.下~) **복지부**
 - **(협의체 정례화)** 아동학대-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학대대응협의체 정례화
 - **(대응 절차 강화)**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조치,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등 대응 절차 수행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의견 청취 절차 강화

IV. 과제별 추진계획

구분	추진 과제	주관기관	일정
1. 위기아동 조기발견 “우리를 찾아주세요”			
❶ 위기 영유아 발굴 체계 고도화	위기아동 발굴 체계 내실화	복지부·경찰청	'26.5.~
	위기정보 공유 확대	복지부	'27.~
❷ 의료·보육·교육 서비스 연계	의료서비스 연계	복지부	'26.~
	보육·교육기관 협력 강화	교육부	'26.~
2. 피해아동 보호·지원 “우리를 지켜주세요”			
❶ 피해아동 회복지원 강화	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	복지부	'26.~
	일시보호조치 개선	복지부	'26.~
	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원 강화	복지부·행안부	'26.下~
	의료지원 강화	복지부	'26.~
❷ 법적·제도적 개선	법령 개정	법무부·복지부	'26.~
	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체계 구축	복지부	'26.~
	소통 창구 확대	복지부	'26.~
3. 학대 예방 및 가정회복 지원 “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”			
❶ 학대 예방 및 권리 인식 증진	부모 교육 확대	성평등부·교육부·복지부·행안부	'26.~
	예방적 지원 강화	복지부	'26.~
❷ 가족 지원 강화	집중 사례관리 확대	복지부	'26.~
	사례관리 강화	복지부	'26.~
4. 장애아동 학대 예방·대응 “우리의 다양성을 알아주세요”			
❶ 장애아동 학대 예방·대응 강화	장애아동 특화 쉼터 운영	복지부	'26.~
	종사자 교육 강화	복지부	'26.~
	대응체계 강화	복지부	'26.下~

구분	과제명	세부 과제	담당부처 (협조부처)
1. 위기아동 조기발견 “우리를 찾아주세요”			
❶ 위기 영유아 발굴 체계 고도화	위기아동 발굴 체계 내실화	♦ 의료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전수조사	복지부 경찰청
		♦ 발굴 모형 개선	복지부
		♦ 점검 내실화	
	위기정보 공유 확대	♦ 위기정보 공유 확대	복지부
❷ 의료·보육· 교육 서비스 연계	의료서비스 연계	♦ 영유아건강검진 개선	복지부
		♦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	
	보육·교육기관 협력 강화	♦ 어린이집 방치 의심 아동 점검	교육부
		♦ 보육·교육기관 결석 관리 강화	
		♦ 취학 정보 연계	교육부 (행안부)
		♦ 입학연기 절차 개선	교육부
2. 피해아동 보호·지원 “우리를 지켜주세요”			
❶ 피해아동 회복지원 강화	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	♦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- 영유아 특화 쉼터 운영	복지부
	일시보호조치 개선	♦ 일시보호조치 개선	복지부
	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원 강화	♦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보강	복지부 (행안부)
		♦ 근무 지원 강화	
	의료지원 강화	♦ 새싹지킴이병원 확대	복지부
		♦ 새싹지킴이병원 인센티브 강화	
		♦ 새싹지킴이병원 전담인력 교육	
❷ 법적·제도적 개선	법령 개정	♦ 아동학대처벌법 개정	법무부
		♦ 아동복지법 개정	복지부
	아동학대의심사망 사건 분석체계 구축	♦ 사망사건 분석 기반 마련	복지부
		♦ 특별위원회 운영	
		♦ 아동사망검토제 도입 검토	
	소통 창구 확대	♦ 관련 단체 네트워크 구축	복지부

구분	과제명	세부 과제	담당부처 (협조부처)
3. 학대 예방 및 가정회복 지원 “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”			
❶ 학대 예방 및 권리 인식 증진	부모 교육 확대	♦ 양육지원급여 연계	복지부 (성평등부) (교육부)
		♦ 양육 관련 기관 연계	성평등부 복지부 교육부
		♦ 정부24 연계	성평등부 행안부 (교육부) (복지부)
		♦ 교육 콘텐츠 강화	성평등부 복지부 교육부
	예방적 지원 강화	♦ 아동학대 예방·조기지원 시범사업	복지부
		♦ 정신건강관리 연계	
❷ 가족 지원 강화	집중 사례관리 확대	♦ 방문 똑똑! 마음 똑똑! 사업	복지부
		♦ 휴식 프로그램 제공	
	사례관리 강화	♦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처우개선	복지부
		♦ 사례관리 연계 절차 개선	
4. 장애아동 학대 대응 “우리의 다양성을 알아주세요”			
❶ 장애아동 학대 예방·대응 강화	장애아동 특화 쉼터 운영	♦ 장애아동 특화 쉼터 운영	복지부
	종사자 교육 강화	♦ 종사자 교육 강화	복지부
	대응체계 강화	♦ 학대대응협의체 정례화	복지부
		♦ 장애아동 학대 대응 절차 강화	